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행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·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의4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별표 3의5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2조(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3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